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안내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www.csi.go.kr)

건진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안내

설계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향타 및 향발기 다. 타워크레인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상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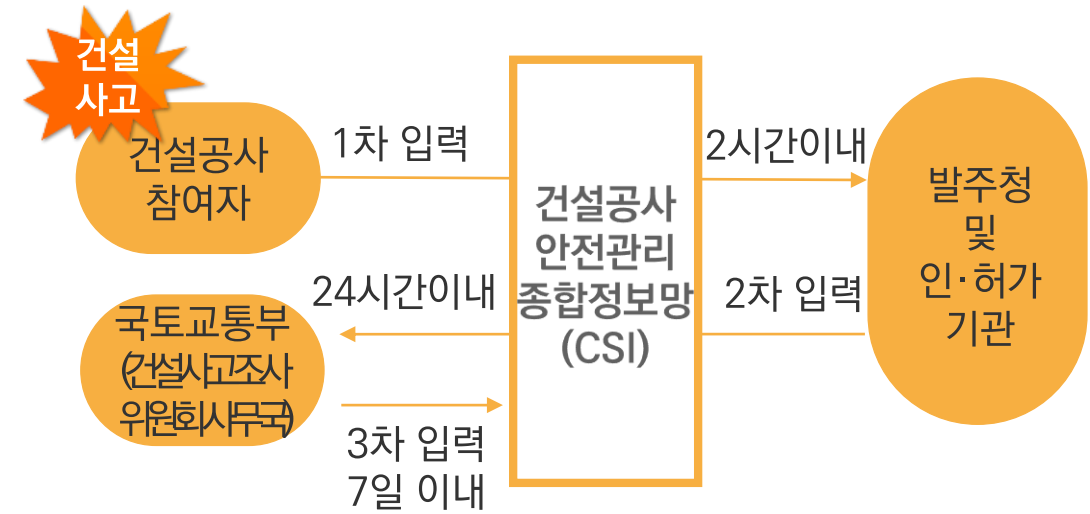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업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안전점검 결과제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부장관에게 제출
종합보고서 제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결과 적정성 검토	국토부장관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요청

건진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업무안내

건설 사고신고 대상

모든 건설사고에 대해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사고 내용을 즉시 국토부장관에게 제출(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건설사고 신고절차



단계	주체	신고시간*	내용	비고
1차	건설공사 참여자	2시간 이내	개략 보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4조7항
2차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24시간 이내	사고조사 DB 추가입력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9조5항
3차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 위원회사무국)	정밀현장조사 이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4항

01 설계안전성(DFS)검토 및 관리시스템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의 제3항

[시스템 소개]

건설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저감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기존 위험요소프로파일(Hazard Profile)로부터 해당 공사의 위험요소프로파일 체크리스트를 생성하여 위험에 대한 저감책을 반영한 시스템

[시스템 이용방법]

발주청은 검토결과 작성을 시작. 공단 검토 제출의 경우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공사개요, 첨부서류, 위험요소프로파일 및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 자체 검토 제출의 경우 공사개요, 첨부서류, 위험요소프로파일, 기술자문위원회 검토 파일을 작성 및 첨부하여 제출. 공단에서는 제출된 검토결과를 확인 후 시스템에 최종적으로 제출완료 등록

02 위험요소 프로파일 관리시스템

[시스템 소개]

공사구분별 공종별 위험요소프로파일의 지속적 갱신 관리와 이를 이용 하여 해당공사의 위험요소프로파일 체크 리스트를 생성·보완하여 설계안전성 검토에 활용되게 함으로써 건설사고의 사전 방지·저감책을 지원

[시스템 이용방법]

발주청은 검토결과 작성을 시작. 공단 검토 제출의 경우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공사개요, 첨부서류, 위험요소프로파일 및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 자체 검토 제출의 경우 공사개요, 첨부서류, 위험요소프로파일, 기술자문위원회 검토 파일을 작성 및 첨부하여 제출. 공단에서는 제출된 검토결과를 확인 후 시스템에 최종적으로 제출완료 등록

03 안전관리계획서 관리시스템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4

[시스템 소개]

공사구분별 공종별 위험요소프로파일의 지속적 갱신 관리와 이를 이용 하여 해당공사의 위험요소프로파일 체크 리스트를 생성·보완하여 설계안전성 검토에 활용되게 함으로써 건설사고의 사전 방지·저감책을 지원

[시스템 이용방법]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와 검토결과서 파일을 제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받은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파일을 제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파일을 제출

04 사고 신고·조사 운영 시스템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2항

[시스템 소개]

건설사고 발생 즉시 신속한 사고 신고 체계 구축 및 사고 정보를 입력과 동시에 관련 기관으로 전파·공유하고, 사고 후 조사 및 조치정보를 해당 시점에 입력·보고·공유하는 시스템

[시스템 이용방법]

건설공사 참여자는 2시간 이내에 건설사고신고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여 사고내용 입력,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건설공사 참여자의 입력사항을 확인 수정 및 사고내용을 상세 입력하고 추가적인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고

건설현장 점검 관리시스템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한 업무지원, 건설현장 등의 점검 업무지원, 조치 및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 점검 이력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건설 참여자 안전관리수준 평가 관리시스템

건설공사참여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시행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사고 DB 구축·분석 시스템

사고발생신고 및 조사내역(건설사고관리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기준에 의한 사고사례를 여러 형태의 분석자료를 생성·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안전사고 관리시스템

사고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발전할수 있었던 안전사고 (아차사고) 신고 및 대응업무 지원과 신고자 포상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건설기술평가 관리시스템

시공평가 및 용역평가의 업무대행 의뢰와 평가실행 및 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연계하고 향후 건설기술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건설공사 및 용역 관련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모바일 시스템

건설공사 안전관리 현장서비스를 구축하여 상시 건설안전정보 조회 및 검토를 위한 모바일 웹 기반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 3A 환경 구축으로 현장업무 효율성 증가에 따른 건설 재해를 감소효과 제고

과태료 관리시스템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 관리체계 구축. 현장에서의 관련법 준수를 통한 안전관리 업무 체계를 정립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효과를 모니터링 함